2017년
재도전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중소기업청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 차

1. 2017년 정책방향 (중소기업청) ····· 1

2. 재도약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 13

3.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안내 (창업진흥원, NIPA) ····· 29

4.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41

2017년 정책방향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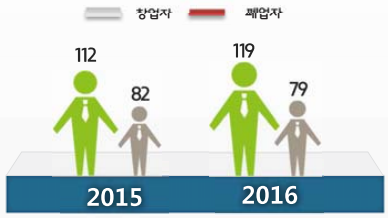
CONTENTS

1 재도전 정책 추진 배경
2 재도전 정책의 중요성
3 재기기업인의 현실과 어려움
4 그간의 재도전 지원정책
5 20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
6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1. 창업·폐업기업 현황 ('15년말 기준)

2016년도 기준 창업은 119만개 폐업은 79만개이며,
창업 5년 이내 10개의 기업 중 7개의 기업이 폐업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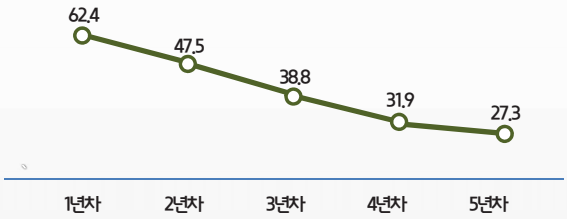
창업·폐업현황 (단위: 만개)



(2016, 국세청 통계연보)

기업 생존율 (단위: %)

(2016,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향후 금리인상과 불황에 따른 여파로 한계기업과 실패기업인 증가 예상



경향신문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017면 경제 기획

기업 부실위험 꾸준히 증가… 취약성 지수 5년 만에 최악

'만성적 한계기업' 2804곳, 제조·건설·부동산·임대업 특히 우려

국내 만성적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2011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칫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일관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가 0이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는 2011년 마이너스 1.17로 떨어졌다가 2012년 마이너스 0.96, 2013년 마이너스 0.69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취약성 지수는 기업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부도율 등 64개 지표를 활용해 이번에 처음 개발됐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과거(2001~2014년)에 한 차례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을 뜻한다. 한계기업은 지난해 기업,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업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 특수목적용 기계, 전자부품, 1차 철강 등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재도전 정책의 중요성

1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축

「창업→투자→기업성장→회수 or 퇴출→ 재창업」은 자연스러운 기업 생태계

-기업 생존율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하나 창업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대체로 공통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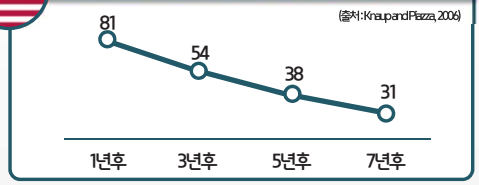
1992년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출처: Shane, 2008)



1998년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출처: Knaup and Piazza, 2006)



재창업 기회 부재 → 사업 정리보다 사업 연명에 매달리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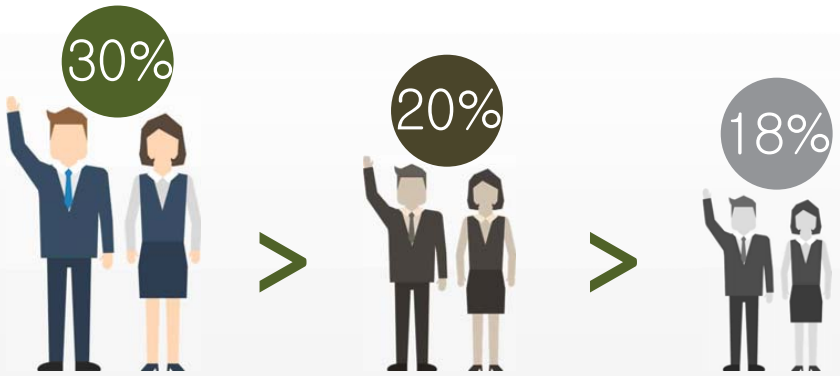
2 창업 실패비용 최소화

창업 실패는 낙인 효과, 가정 불화, 경제적 곤경에 이르게 함

창업에 따른 학습 기회를 사장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초래

2. 재도전 정책의 중요성

참고 **(재)창업에 성공하는 비율** (Gompers et al, 2009)



이전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 > 이전 창업에 "실패"한 창업자 > "처음" 창업자

중소기업청

4

2. 재도전 정책의 중요성

Q. **민간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



재도전 지원의 전제 조건

- 성실 경영
- 사업성 높은 아이템과 재기 역량
- 실패원인 치유

중소기업청

5

3. 재기기업인의 현실과 어려움



재도전 시도



금융거래 불가



불리한 신용정보

불리한 신용정보의 종류와 그에 따른 영향

구분	해제사유	기록보존기간
연체정보	갚을 때 또는 7년 후	갚지 않은 기간(최대1년)
체납정보	등록사유 해소 또는 7년 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
신복위 신용회복	변제완료 또는 2년이상 변제	해제와 동시에 삭제
파산면책	면책채권 변제 또는 5년 경과	해제와 동시에 삭제

1년 이상 연체자가 연체정보 해지 후 재기지원을 받더라도
抵 신용등급(8~9등급) 3년간 지속



연대보증, 조세 채무

4. 그간의 재도전 지원정책

1 제도 개선(1)

연대보증 면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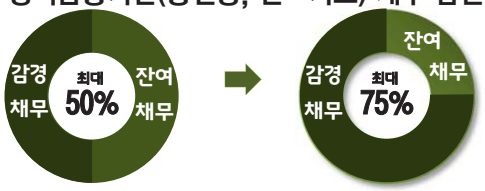
- 2011.1. 중진공 (3등급이상 조건부)
- 2012.3. 중진공 (4등급이상 조건부)
- 2012.5. 제1금융권 (제3자 연대보증)
- 2013.7. 제2금융권 (제3자 연대보증)
- 2014.1. 중진공 (5등급이상 조건부)
- 2014.2. 신 · 기보 (우수창업기업, BBB이상)
- 2015.1. 중진공 (1~4등급 면제, 5등급 조건부)
- 2016.1. 신 · 기보 (창업 5년이내, 90%)
- 2016.7. 신 · 기보 (은행보증분, 10% 추가)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및 빠른 신용등급 회복

- 재창업자금 받은 기업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제한 (블라인드 처리)
- 재창업자금 받은 기업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시 가점 부여
  예) 10→6등급 상승 기존 2.6년 소요, 가점부여 1.6년 소요

채무감면비율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시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 · 기보) 채무 감면 ↑



4. 그간의 재도전 지원정책

1 제도 개선(2)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을 받은 자 (체납금액 한도) 3천만원

- **징수유예**



일반 → 재기중소기업인

- **체납처분 유예**



일반 → 재기중소기업인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급 지원**

  * 신청대상 : 대출일로부터 2년 내 보증지원 신청 기업 (기업당 5억원)
  * 발급증권 : 이행보증보험(입찰, 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 지급) 및 인허가보증보험
  * 보증실적(15.6.~16.11.) : 283개사 178억원



한국경제 2015년 05월 29일 금요일 A14면 경제

재도전 기업에 최대 5억 보증 지원

SGI서울보증, 중기청과 MOU

SGI서울보증은 실패를 딛고 재기에 나선 '재도전 기업'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이행 인허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28일 서울 연지동 본사에서 중소기업청과 '재도전 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실패한 기업 중 재창업에 나서 작년 1월 이후 중기청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600여곳이다. SGI보증보험은 이들 기업이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업체당 5억원 내에서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4. 그간의 재도전 지원정책

2 지원사업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



재창업자금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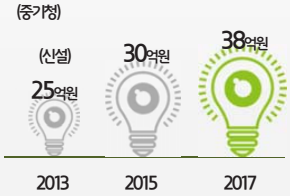


재도전 지원센터



* 7개소(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경남)

재창업자 전용 R&D



* 산업부 : 30억원('16, 신설)

회생지원법원 협약 확대



5. 2017년도 재도전지원정책

1 재도전 지원정책 개관

구분	교육·컨설팅	사업화·기술개발	융자·보증
위기극복 지원 (Turn-Around)	진로제시컨설팅 (260개사) 회생컨설팅 (55개사)	-	사업전환자금 1,250억원 구조개선자금 300억원 재기지원보증 (신,기보)
재창업 지원 (Re-Startup)	재도전경영자 힐링캠프 (100개사)	(중기청, 38억원) 창조혁신형 재도전 R&D (미래부, 30억원) K-Global ICT 유망 기술개발 (산업부, 30억원) 재도전기업 연계공공기술사업화	재창업 자금 1,000억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중기청, 100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 200개사 -(미래부, 25억원) 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 50개사		

중소기업청 10

5. 2017년도 재도전지원정책

2 (제도) 재도전 걸림돌 제거를 위한 노력과제 (관계부처 협의)

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추진

(현행)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내 → (개선안) 7등급 이내

개선전

기업평가등급	연대보증	가산금리
SA+(1), SA(2)	면제	-
SB+(3), SB(4)		
SB-(5) (창업기업)	조건부 면제	0.5%

개선후

기업평가등급	연대보증	가산금리
SA+(1), SA(2)	면제	-
SB+(3), SB(4)		
SB-(5), SC+(6), SC(7) (창업기업)	조건부 면제	0.5%

② 징수(체납)유예 범위 확대 추진

(현행) 재창업자금을 받은 자, 3천만원

(개선안) 성실경영평가를 받은 자, 5천만 ~ 1억원

③ 압류배제 재산범위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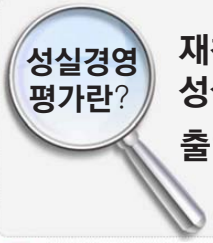
(현행) 생계비 900만원, 가구 · 의복 등 생필품

(개선안) 피부양자수, 연령 등을 고려한 생계비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용과 생필품 면제 등

중소기업청 11

5. 2017년도 재도전지원정책

3 성실경영평가 시행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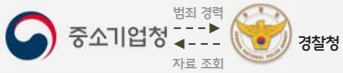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재창업 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2016.7.28. 시행) –

도입배경

실패기업인은 모두 부도덕(불성실) 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재도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에 애로 ➡ 다수의 성실한 재창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정책으로써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 필요

주요 평가기준

- 분식회계, 고의부도, 사기, 배임, 횡령, 조세범, 부정수표 등 과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
- 부당해고, 고의적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 여부
-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 부도덕한 경영사실 여부
- 위장폐업, 의도적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등 불성실 경영 여부



5. 2017년도 재도전지원정책

4 (Re-Start) 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 및 재창업 R&D 신설 등

■ 재도전 성공패키지

- ▸ 예산 확대 : 53 → 100억원 (지원업체 : 100 → 200개사 내외)
- ▸ 2-Track 운영 (Track1, 계획고도화) 교육 · 멘토링 → BM정립 → 시제품제작 (평균 25백만원)
  (Track2, 사업화) 교육 → 시제품제작 (평균 35백만원/최대 1억원)

■ 재도전 기술개발(R&D)

구분	창조혁신형 재도전 (중기청)	K-Global ICT 유망 (미래부)	재도전 공공기술사업화 (산업부)
예산	38억원	30억원	30억원
대상	재창업 7년 미만	재창업 3년 이내	재창업 자금, 재기보증, 회생인가 기업
특징	혁신성 등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술	ICT분야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 접목 기술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이전 및 상용화 개발
주관기관	기술정보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2017년도 재도전지원정책

5 (Turn-around) 사업전환 자금 및 회생컨설팅 대상 확대

■ 사업전환 자금 지원 기간 확대

-자금신청 가능기간 : ('16.) 사업전환 승인 후 3년 → ('17.) 승인 후 5년

사업전환 자금	▶ (대상) 업력 3년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전체 매출액 35%이상) ▶ (한도) 업체당 연간 7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기간) 시설 8년, 운전 5년 이내

■ 회생컨설팅 대상 확대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 ('16.) 채무액 30억원 이상 → ('17.) 채무액 기준 없음

회생 컨설팅	▶ (범위)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 적용 ▶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청 14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금을 체납했는데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일반적으로서 3천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 이상의 경우 세금납부 계획을 제출받아 교부 여부를 판단



중소기업청 15

6. 자주 묻는 질문(FAQ)

Q2 재창업자금을 받은 재기기업인 입니다. 국세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에
'재창업 자금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으로 기재하면, 최대 36개월 유예 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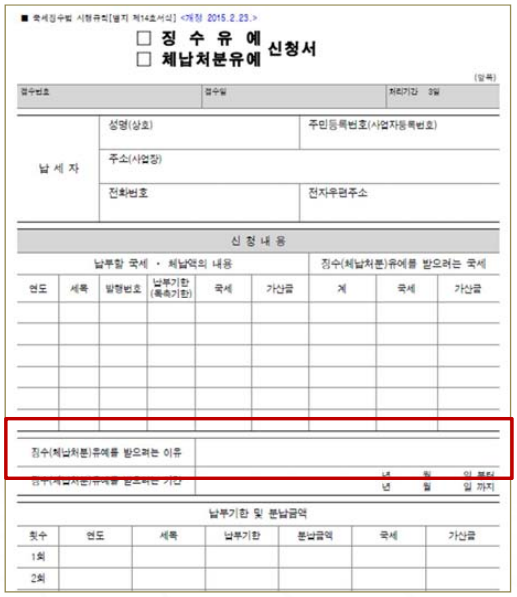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제99조의 8)

■ 일반적인 징수 유예 : 최대 9개월

6개월 유예 — 3개월 분납

■ (재창업 자금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 유예 : 최대 36개월

30개월 유예 — 6개월 분납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23.>

☐ 징 수 유 예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회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6. 자주 묻는 질문(FAQ)

Q3 제도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신용기록(파산)으로 불이익이 여전

■ 신용정보 사회에서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삭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다만, 재창업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위해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

① 일부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삭제 처리가 아님)
- 블라인드 정보 : 신복위 신용회복 기록, 회생 기록, 재창업자금 기록

② 정상 상환 시 CB사 신용 평가시 가점 부여하여 빠른 신용등급 상향 ('16.9.~)

③ 국세 체납유예와 징수유예 가능기간이 일반 보다 3배 이상 길게 가능
- 국세 체납유예 및 징수유예 : 최대 36개월

■ 향후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감사합니다.

재도약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7 재도약지원사업 안내

2017. 1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Ⅱ

2017년 재도약지원 사업계획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지원체계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2. 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행성오락업종, 고소득 직종,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지원제외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2. 정책자금 지원대상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2. 정책자금 지원대상

융자제한기업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2. 정책자금 지원대상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제한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I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3. 정책자금 규모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준 : 2017년, 억원)

세부사업	예산	내역사업		사업분야
창업기업지원자금	16,500	• 일반창업기업지원	15,300	창업기업의 생산기반 마련지원
		• 청년전용창업	1,200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500	• 이익공유형	1,100	저금리 대출 후 영업이익 공유
		• 성장공유형	400	전환사채 인수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 개발기술사업화	3,500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수출금융지원	1,750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기업 지원
		• 수출사업화	500	정부수출지원사업선정기업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등
신성장기반자금	8,800	• 신성장유망	5,000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500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장기자금 지원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3,300	고성장기업 지원
재도약지원자금	2,550	• 사업전환	1,250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 구조개선전용	300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지원
		• 재창업	1,000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 일시적경영애로·재해	750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조성

예산 총계 : 35,850 * 전년 당초 대비 750 억원 증액

4. 정책자금 기준금리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사업별 가감금리

① 기준금리 ('17.1분기 2.30%)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연동(조정계수 차감)

* 분기별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전전분기 종료월 21일 ~ 전분기 종료월 20일 ' 누적 평균

②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

	자금명	사업별 기준 금리
0그룹	창업기업지원[일반, 일반(민간투자연계)], 신시장진출지원[글로벌진출(수출금융)]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1그룹	재도약지원(무역조정 제외), 신성장기반[(유망(인재육성형, 협동화)] 신시장진출지원[개발기술, 글로벌진출(수출사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
2그룹	신성장기반[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기업육성]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p
3그룹	긴급경영안정(일시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

* 시설자금은 0.3%p 금리 우대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사업별 고정금리 적용 가능(협동화 · 협업 제외)

5. 정책자금 평가방식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기술사업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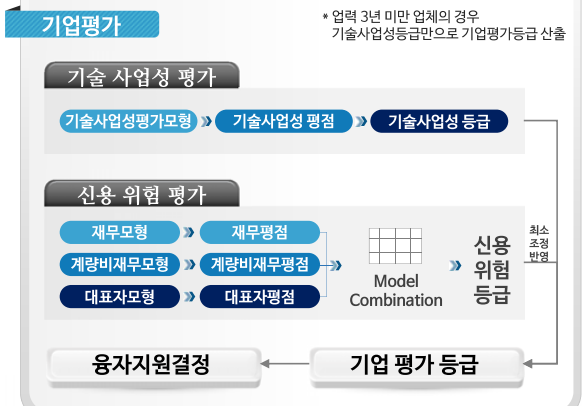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Version 1.0
- 시기 • '04년
- 주요내용 • 기업평가 모형 도입

Version 2.0
- 시기 • '05~'08년
- 주요내용 •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Version 3.0
- 시기 • '09~'16년
- 주요내용 •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 모형 개편 및 고도화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하여 **기업평가 등급 산출**



6. 정책자금 집행방식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기반 맞춤연계지원

* 기업 여건에 따라 Two-Track(기업진단 연계 또는 일반지원)으로 운영

	기업진단 연계 방식	일반 방식
지원절차	진단신청 → 진단·평가 → 자금지원+맞춤연계	자금신청 → 평가 → 자금지원
지원규모	1.2조원	2.3조원
처리기간	사업별 처리기간 (최대 30일)	사업별 처리기간 (최대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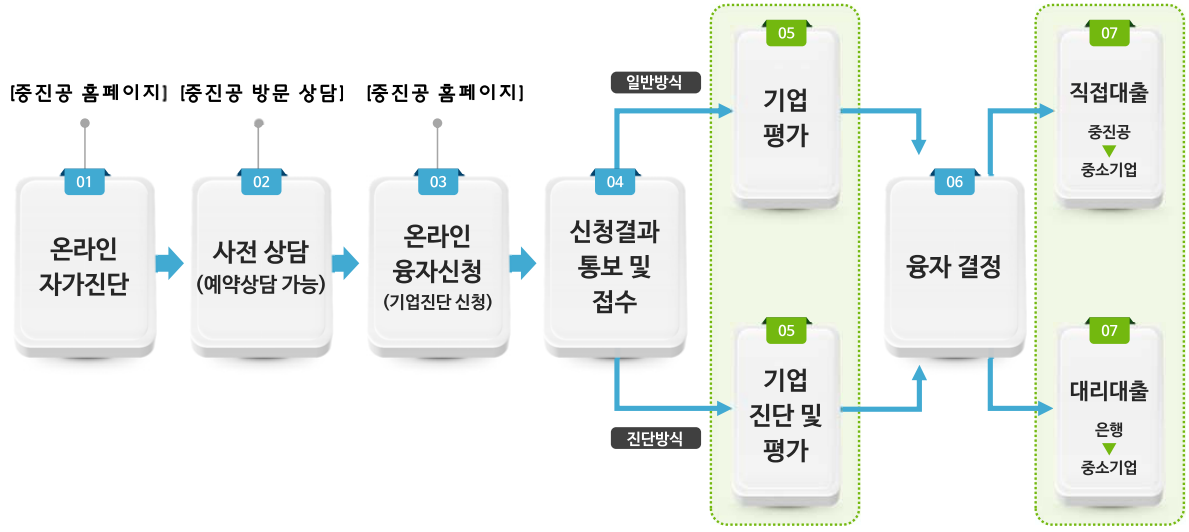
기업진단 프로그램 추진체계

* 업종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위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



7. 정책자금 지원절차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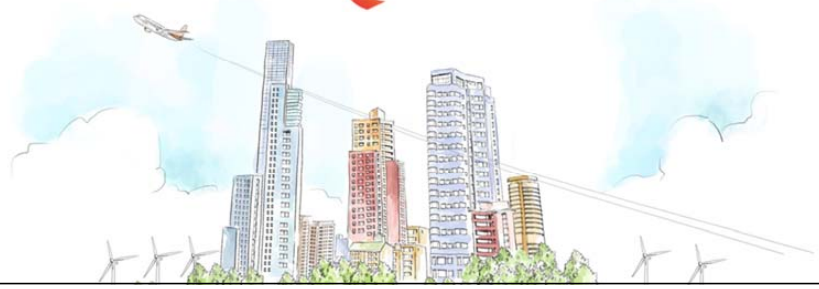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

Ⅱ

2017년 재도약지원 사업계획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1. 재창업지원자금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 운전자금, 사업장(경 · 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 온라인 신청 → 기술 · 사업성 평가 → 지원결정 → 재창업교육* → 대출**

  * 예비재창업자 5일, 기재창업자 4일 과정 교육 필수 이수
  *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

1. 재창업지원자금

-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 (신용불량)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 *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성실경영평가 실시
  -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상환금조정형으로 지원**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1. 재창업지원자금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청방법 : 서울, 대전, 부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2. 사업전환지원자금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추진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7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 운전자금, 사업장(경 · 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신 청	→	진단 및 현장실사	→	사업전환계획승인 무역조정기업지정	→	융자, 컨설팅 등 지원 및 사후관리
기 업		중진공		중기청/산업부		중진공

2.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대상

- **(사업전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②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무역조정)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①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일정 기준(총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을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재편) 『기업활력제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3.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불가)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불가)

지원절차

상 담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및 신기보지정	은행권 추천		자금실사		자금지원
기 업	⇨	중진공	중진공, 신 · 기보	기업신용위험등급 B,C 혹은 자체 워크아웃 추진	⇨	중진공	⇨	중진공

⇨

워크아웃 추진 기업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등록기업 및 회생인가 (종결 후 1년이내 포함)기업

3.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대상기업

. 신용위험 평가결과 B(fast-track), C(워크아웃)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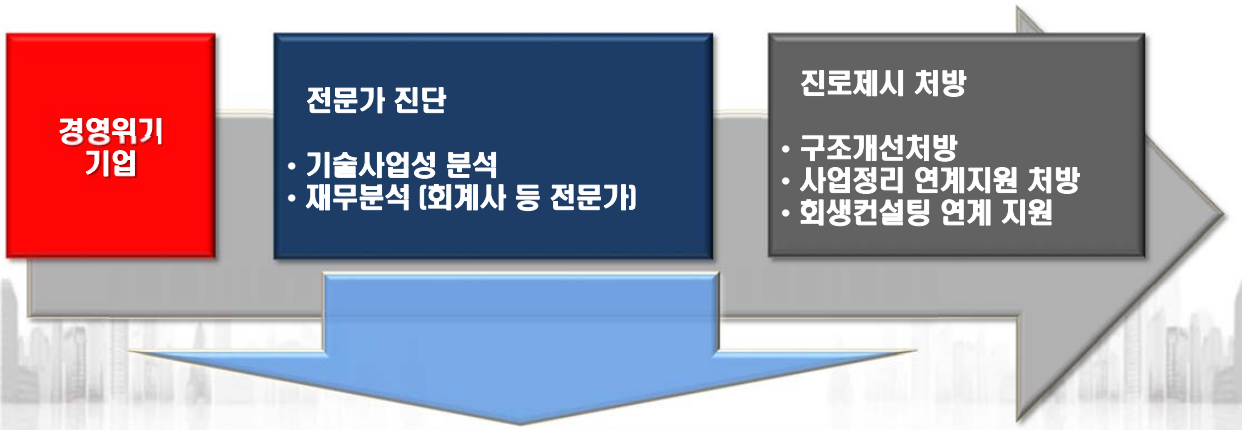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대상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4. 진로제시컨설팅



- 부실기업의 신속정리(파산절차 및 사업정리 행정 절차 안내)
- 회생절차 수행가능성에 따른 회생절차 조기 유도 및 남발방지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경영진의 부도덕성 및 채권자 성향인 경우 사업정리 및 기타 솔루션 처방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채권자의 동의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컨설팅 처방
-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기업노하우 소멸 및 기업인 재도전 기회상실) 감소

4. 진로제시컨설팅

신청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지원대상 업종 영위기업 ▪ 사업정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 총 컨설팅 지원일수 3일~5일 , 중진공 전액지원 (180만원~24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지원의 경우 최대 8일, 420만원 지원) ▪ 단, 컨설팅에 대한 부가세는 지원기업부담(18만원~24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지원의 경우 최대 42만원 부담)
컨설팅내용	▪ 기업 기술사업성분석을 통한 향후 3년간의 기업사업계획 타당성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향후 1년간 채무방어능력분석(재무분석) ▪ 재무분석결과에 따른 기업의 회생절차 이행여부 분석(심층분석) ▪ 심층분석결과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 상황에 맞는 진로제시 – 기술사업성 전문가는 건강진단 전문가 – 재부분석은 공인회계사(법원 회생사건 조사위원 경력자 등)

4. 진로제시컨설팅

컨설팅 결과	▪ 회생지원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회생컨설팅 연계 ▪ 구조개선일 경우, 적절한 시책연계(구조개선전용자금 등) ▪ 사업정리일 경우, 사업정리방법(개인회생/파산, 폐업) 및 재기시책안내
신청방법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에서 신청 ▪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 사업기간: 2017. 2 ~ 예산소진 시

5. 기업회생컨설팅

회생컨설팅 지원결정기업

전문컨설턴트

- 법무컨설팅 (변호사)
- 회계재무컨설팅 (회계사)

컨설팅 수행

- 개시신청서 작성
- 채권시부인표 작성지원
- 관리인보고서 작성지원
-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컨설팅제공
- 회생계획안 인가율 제고(전국평균 34%-> 54.2%)
- 기간단축(종전 12개월-> 9개월)
- 비용절감(평균 4,500만원-> 2,500만원)

5. 기업회생컨설팅

신청대상	▪ 진로제시 컨설팅을 통해서 회생컨설팅 처방을 받은 기업 ▪ 협약법원에 회생신청한 기업(개시결정 기업은 제외) – 사전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 결정 – 업종요건은 진로제시 컨설팅과 동일
컨설팅내용	▪ 법률전문가 및 재무회계전문가의 밀착지원 – 개시신청, 채권시부인, 관리인보고서 및 회생계획안 작성업무 지원 – 회생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세무 및 법무업무 자문 – 채권자 동의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3,000만원(기업부담비율 10%~40%) ▪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임 ▪ 회생컨설턴트가 조사위원 업무겸임

5. 기업회생컨설팅

신청방법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에서 신청 ▪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 사업기간: 2017. 2 ~ 예산소진 시

6. 자산거래 중개장터 (중고몰)

중소기업의 기계·설비 거래 지원을 통해 기업 자산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웹사이트 주소 : www.joonggomall.or.kr
- 주요 서비스
  - 다양한 매각/매입 유휴자산 정보 제공
  - 직거래, 입찰경매 등을 통하여 자산 거래
  - 유관기관*의 유휴자산 정보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
- 지원절차

회원가입 및 매매 희망 자산정보 등록	→	등록정보 정리 및 유효성 확인	→	거래 정보 제공 및 매물 신문광고	→	자율거래를 통한 매매
이용자		중진공		중진공		이용자

<참고> 권역별 재도약지원사업 상담 연락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2) 3430-3181	대전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42) 866-0153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33	경남재도전 종합지원센터 (창원시)	(055) 212-1384
서울서부재도전 종합지원센터 (목동)	(02) 6678-4150	충남 (천안시)	(041) 621-3676	강원 (춘천시)	(033) 259-7635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12
서울북부 (중구)	(02) 769-6418	충북 (청주시)	(043) 230-6812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3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4
인천재도전 종합지원센터 (연수구)	(032) 450-0532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15	광주재도전 종합지원센터 (광주시)	(062) 600-3021	제주 (제주시)	(064) 751-2023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73	전북 (전주시)	(063) 210-9922	전남 (무안군)	(061) 280-8040		
경기 (수원시)	(031) 259-7921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22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403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404	대구재도전 종합지원센터 (대구시)	(053) 601-5277	부산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51) 630-7426		
경기서부 (안산시)	(031) 496-1014	경북 (구미시)	(054) 476-9317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84-3626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35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4	울산 (울산시)	(052) 703-1127		

- 지역본(지)부(소재) : 홈페이지(www.sbc.or.kr) 내 오시는 길 참조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안내
(창업진흥원, NIPA)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2017.1.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창업진흥원 |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실적

Ⅱ 사업개요

Ⅲ 절차별 세부내용

Ⅳ 향후일정

Ⅴ Q&A





Ⅰ

추진배경 및 실적

Ⅰ.추진배경 및 실적

- '10년 재창업자금(융자) 도입을 시작으로 보증, 엔젤 투자, R&D 등 다각적인 재기정책 신설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

- 이는, 재도전 기업인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실패원인 분석 등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부족이 원인

우수 재기 창업자를 발굴.선별 . 교육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하는 '신속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3

Ⅰ.추진배경 및 실적

'16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 53억원

'17년부터 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미래부(NIPA,35억원)와 협업

실적 재창업성공캠프 구축(서울, 부산)

R-Camp(재창업성공캠프)	재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
서울 팁스타운 내 부산 부경대(용당캠퍼스)	70시간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센터 연계 재창업자 교육 과정 마련	서울 98개사 62개사 36개사 부산

〈서울 R-Camp 개소식〉







성과 신청대비 재창업자 매출액, 고용인원 등 실적 지속 증가 추세

Ⅰ.추진배경 및 실적

재창업의 걸림돌

국세.지방세 체납 개인 채무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불가

재창업의 걸림돌 제거

채무불이행 등 재창업의 걸림돌을 제거를 위해 팀 창업 허용
국세체납자(분납계획서 제출 시)까지 참여기회 확대

연초 1회성 모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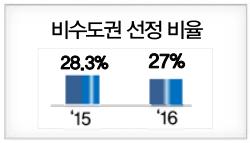
(1차) '17.1월

재창업을 희망하는 수시수요에 대응 가능

(2차) '17.5월

청년 재창업자의 참여도 저조 / 선정 기업의 지역별 불균형





청년 및 지방 (예비)재창업자 참여 시 가점(3점) 우대

수도권 외 지역 재창업자의 참여 저조

지역 우수 재창업자 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전국 투어 재도전 사업 설명회 추진





II

사업개요

Ⅱ.사업개요

'17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개요

목적 우수한 (예비)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대상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산 및 지원 규모 125억원, 250개 사 * 미래부(25억원, 50개 사) 지원과제 포함

지원내용 체계적인 실패원인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보육 등 재창업 全과정 일괄지원

지원절차

지원대상선정	지원유형	재창업교육(공통과정)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재창업교육 (선택과정)	연계지원
• 성실경영평가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Track1 (BM 고도화) Track2 (사업화)	교육(실패원인 분석) 이수 및 멘토링 교육(실패원인 분석) 이수	10백만원 한도 (BM 정립) (평가) 20~90백만원 한도 평균 25백만원 (사업화) 평균 35백만원 / 최대 1억원 한도 (사업화)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맞춤형 심화교육	• 멘토링 / 네트워킹 • 수출 / 글로벌 진출 • 투자 / 자금 연계 • 전시회 참가 지원

7



Ⅲ

절차별 세부내용

Ⅲ. 절차별 세부내용

사업신청

신청기간 '17년 1월 10일(화) ~ 2월 9일(목), 18:00까지

신청방법 (일반분야) K-Startup (ICT 분야) NIPA SMART

신청대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④항 중소기업청장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 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표

예비재창업자 폐업이력('17.2.28 이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등의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일반분야는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재창업기업 대표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9

Ⅲ. 절차별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유형

지원방법 사업아이템에 따라 일반(제조, 지식서비스) 및 ICT 분야로 구분, 재창업 전과정 지원

* 일반분야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ICT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지원

지원유형 평가결과(서면, 대면)에 따라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평균 10백만원 ~ 35백만원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절차 >

단계	Track1 (BM 고도화)	Track2 (사업화)
1단계	기업당 1천만원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평가	
2단계	기업당 평균 2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고도화, 1천만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Ⅲ. 절차별 세부내용

선정평가

평가시기 '17.2~3월 중 — Track1,2 (공통)

평가방법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글로벌화, 기술사업성 강화를 위한 계획 및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

서면평가 창업역량(폐업원인 등)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2배수 선별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BM고도화 후 심층면접을 포함한 멘토링평가를 통한 재평가 — Track1

서면평가	대면평가	재창업교육(공통) + 멘토링평가
• 사업아이템 기술시장성 • 재창업자 역량 등	• 사업아이템 기술시장성 • 재창업자 역량 등	• 실패원인분석 • BM고도화 • BM 및 재창업자 역량 • 교육결과 평가에 반영

Ⅲ. 절차별 세부내용

BM고도화/사업화

목적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를 최종 발굴하여 체계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 창업실패율 제고

추진일정 (BM고도화) '17. 4~5, 2개월 / (사업화) '17. 4~'18. 1, 10개월 내외

주관기관 서울, 부산 등 R-Camp (재창업성공캠프)

*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개소 예정

주요내용 (BM고도화) 시장분석비 등 / (사업화)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정부지원금 10~1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5% 이상	25%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12

Ⅲ. 절차별 세부내용

재창업교육

교육목적 실패원인 분석 및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교육시기 '17.4월 ~ 6월 중

이수시간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내외

구분	내용	이수시간
공통과정	실패원인분석 및 로드맵 수립 등	40시간 내외
선택과정	세무, 노무 등 학점은행제 도입(이수증 제출시 인정)	30시간 내외

교육방법 공통과정은 실패원인 분석 등 필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선택과정은 사업기간 중 교육기관, 시간 및 과목 등을 선택하여 이수 가능

공통과정 실패원인분석 및 경영관리 상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선택과정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13



Ⅳ

향후일정

Ⅳ. 향후일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17.1.10	→ 신청접수 K-Startup / NIPA(Smart) '17.1.10~2.9	→ 서면평가 창업진흥원, NIPA '17.2월
		↓
멘토링평가 (재창업교육+멘토링+심의) 창업진흥원 '17.6월 중(Track1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NIPA '17.4월	← 대면평가 창업진흥원, NIPA '17.3월
↓		
협약체결 창업진흥원, NIPA – (예비)재창업자 '17.4월	→ 사업수행 창업진흥원, NIPA '17.4월 ~	→ 후속 연계지원 창업진흥원, NIPA '18.1월~

15



V

Q&A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창업진흥원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안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7년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사업개요

2 추진절차 선정절차

3 신청방법 유의사항

중소기업청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및 대상

- 지원목적
  - 우수한 기술력 · 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지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8억원, 27개 과제
-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1. 사업 개요

지원내용 및 자격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기획 지원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 ·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공공정보" 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 · 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필요 시 참여)
  -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2. 추진절차 및 선정절차

추진절차 및 선정절차

- 과제선정



- 과제수행

- 선정절차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및 접수증 출력 요망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지원 또는 기개발 과제(유사과제 포함)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의무사항 불이행한 경우(기술료 및 정산 · 환수금 미납 등)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완전잠식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등이 확정된 자는 예외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기타

- 1개 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 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3~16년 재창업R&D사업 지원과제는 신규과제 신청 불가
- 1개 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 지원
  * 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사업내용 등 진행사항 관련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764)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R&D의 혁신을 디자인하다 -

중소기업청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